



제 439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예술치유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 >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15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문화예술치유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안 제2조, 제6조, 제10조, 제21조) ·	2
2. 문화예술치유사 자격제도 신설(안 제2조, 안 제27조의3 등)	8
※ 참고자료	1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6. 25.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음악, 미술, 표현 예술 등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과 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공식 정부 지원사업인 문화예술치유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문자격의 부여 및 관리·지원체계 등 법률적 규정과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문화예술치유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안 제2조, 제6조, 제10조, 제21조)

개정안은 문화예술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내용에 문화예술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문화예술치유 관련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치유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1. -----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나. ----- ----- -----

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
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
예술교육

2. ~ 5. (생략)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
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11. (생략)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 ③ (생략)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10. (생략)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
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
· 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

-----형태의 문화예술교
육을 말하며, 개인의 정서적 안
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이
하 "문화예술치유"라 한다.)를 포
함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

11.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
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0.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
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 문화예술
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
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

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 인력·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이후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처 치유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 치유 사업(“문화로 치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는 “문화예술치유”에 대한 개념, 법적근거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 등에 문화예술치유와 관련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¹⁾

1)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삭제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5. 교원의 연수지원
6.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이에 개정안은 동 법에 “문화예술치유” 및 “문화예술치유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명확한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치유 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치유 사업을 지원·운영하고 있고, 동 사업 관련 프로그램·운영단체·참여자 수 등이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고,

특히, 문화예술치유 사업의 대상이 학교폭력 피해자·치매 위험자·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등으로 국가적·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사람임을 감안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치유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8.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9.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15년 ~ 2026년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예 산	수혜인원		주요 정책대상
		특화대상	일반국민	
2015	860백만원	661명		학교 부적응 및 폭력 피·가해 학생, 군대 부적응 병사, 범죄 사건 거주 주민 등 지원
2016	1,544백만원	853명		
2017	2,544백만원	1,087명		
2018		1,533명		
2019	2,280백만원	1,320명		경도인지장애, 치매위험군 등 추가
2020		6,683명		
2021	1,968백만원	3,738명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추가
2022	3,604백만원	2,049명	4,744명	(취준생, 미혼모, 범죄피해자 가족)
2023		3,439명	5,951명	2021년 대상에서 정서 사각지대 및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반국민 추가
2024		3,658명	10,263명	
2025	5,000백만원	3,610명	12,397명	고립은둔청년, 정서위기 청소년 추가
2026(안)		3,000명	13,000명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 추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마음치유, 봄처럼」 사업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개, 명)

연도	협력부처/기관	지원대상	프로그램수	운영체수	참여자수
2022	치매안심센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군	32	16	416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수요층	26	13	507
	교육부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	60	10	1,126
소 계			118	39	2,049
2023	치매안심센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군	48	17	693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수요층	42	16	784
	교육부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	90	24	1,962
소 계			180	57	3,439
2024	치매안심센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군	48	16	742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수요층	45	15	767
	교육부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	51	17	876
소 계			144	48	2,385
2025	치매안심센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군	82	31	1,360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수요층	45	22	758
	교육부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	82	29	1,340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1	1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정서 위기 청소년	10	6	413
소 계			220	89	3,610

자료: 「2025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 「마음치유, 봄처럼」 효과측정 연구」, p.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치유 사업”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지원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목적, 지원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으로 문화예술치유 관련 사업의 기반 강화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2. 문화예술치유사 자격제도 신설(안 제2조, 안 제27조의3 등)

개정안은 “문화예술치유사”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예술치유 전문인력의 요건·결격사유 및 업무범위 등 자격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2. ~ 5. (생략) 6. “문화예술치유사”란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3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의3(문화예술치유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치유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치유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치유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예술치유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문화예술치유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치유사는 문화예술치유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치유사의 등급, 문화예술치유 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치유 과정, 자격 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치유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의3(자격취소) (생략)	제27조의4(자격취소) (현행 제27조의3과 같음)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4조(청문) ----- -----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사의 자격취소	2. 제27조의4제1항-----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한 정의 및 동 인력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 자격요건, 결격사유, 업무범위 등은 규정²⁾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치유사”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예술치유사”의 정의, 자격요건 등 관련 사항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치유사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화하고 문화예술치유 인력에 대한 관리·지원 등을 체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문화예술치유” 사업이 정부지원 사업으로 계속되며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문화예술치유사” 자격요건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문화예술치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문화예술치유사 관련 자격증 발급 현황]

연번	구분	분야	발급기관	자격증명	등급	발급 기준
1	학회/협회	통합	한국예술치료학회	미술·음악·연극·동작·예술심리상담사	1급·2급·전문가·수련감독	정회원 2년 이상, 관련 학사 이상 또는 2급 후 3년 수련, 기본수련 200시간, 실습 300시간, 감독 30시간, 학술활동 100시간
2		통합	한국통합예술치료 & 연극치료협회	통합예술·연기·연극심리지도사	1급·2급·수련감독	2년제 대학 이상 학력, 자격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 필기·실기 시험 통과(60점 이상), 자격 취득 후 임상활동 1,000시간 이상 수행
3		음악	한국음악치료학회	임상음악 전문가	1급·2급	음악치료 학사/석사, 33학점 이상, 임상실습 1,040시간, 자격시험 합격
4			전국음악치료사협회	음악중재 전문가(KCMT)	단일등급	음악치료 전공 학사/석사, 이론교육 약 500시간, 임상수련 1,040시간, 2급 후 3년 경력, 수련감독 20시간
5		미술	한국미술치료학회	임상미술 심리상담사	1급·2급·전문상담사/수련감독	학사 이상, 관련과목 8과목, 임상 500시간, 슈퍼비전 30시간, 사례발표
6			한국미술치료 상담학회	미술심리상담사·평가사·재활사	1급·2급·전문가·수련감독	학회 교육과정 또는 관련 전공 인정, 자격시험 합격

연 번	구 분	분 야	발급기관	자격증명	등 급	발급 기준
7		연극	한국연극치료학회	연극심리 상담사	1급·2급	관련 학사 이상, 교육과정 이수, 임상 100시간, 교육분석·수련감독 20시간
8			사단법인 한국연극치료협회	연극심리 상담사	1급·2급· 수련감독	2급 후 4년 경력 또는 박사학위, 임상 1000시간, 슈퍼비전 15회
9		무용	(사)한국댄스 테라피협회	무용동작 심리상담사	1급·2급·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임상 30시간, 워크숍 3 회 이상, 슈퍼비전 그룹2·개인2
10	대학 기관	미술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미술심리 상담사	1급·2급	석사과정, 관련 7과목, 임상 60시간, 수련 20시간, 워크숍 60시간, 학술행 사 2회, 연수·워크숍 60시간 이상, 학 술행사 2회 이상 참여, 자격시험 합격
11		미술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미술심리 상담사	단일등급	대학원 교과목 24학점 이상 이수, 특 강·워크숍 30시간 이상, 임상실습 300 시간 이상(슈퍼비전 포함), 자격시험 합격
12		미술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심리 재활사	단일등급	미술치료 교육과정 이수, 발달재활서 비스 관련 교과목 이수 등 자격 기준 충족 시 발급
13		음악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음악심리 상담사	단일등급	음악치료 전공 교과과정 이수 후 자격검 정 시험 합격
14		미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치료교육	미술심리 전문가	단일등급	교육대학원 졸업, 전공 21학점 이상, 현장실습 650시간, 슈퍼비전 65시간, 워크숍 30시간, 사례발표 1회, 특강 2 회, 자격시험 70점 이상
15		음악/ 미술/ 무용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음악·미술· 무용동작 심리상담사	1급·2급	관련 전공 교육과정 이수, 석사학위 취득, 임상실습 수행, 자격검정
16	민간 교육 기관	미술	한국자격평생 교육원 (발급기관: (사)한국심리상담협회)	미술심리 상담사	1급·2급	온라인 교육과정(약 4~6주, 출석률 60~80% 이상) + 시험 합격
17		미술/ 음악	한국능률교육평 가원(발급기관: 한국심리교육협회)	미술·음악 심리상담사/ 아동미술 지도사	단일등급	
18		통합	한국자격검정 평가진흥원	미술·음악· 색채·영화· 연극심리 상담사	1급	
19		미술/ 음악	한국직업능력 진흥원	미술·음악 심리상담사	1급	
20		통합	한국인적자원 진흥원	미술음악독서 심리상담사	1급	
21		미술	한국힐링 아트센터	미술심리 교육지도사	1급·2급· 전문가	
22	협회	음악	대한노래지도자 협회	음악케어 지도자	1급	대학 평생교육원(명지전문대학, 경기 대, 가천대 등) 과 공동연계한 '노래지 도자 아카데미' 수료(약 180시간 후 자격검증 시험 합격)
23	협회	미술	자연환경 미술협회	색채심리놀 이교육지도 자	1급, 2급	교육과정(12주) 이수+시험 합격 후 자 격증 취득 (매년 20명 이내 발급)

연번	구분	분야	발급기관	자격증명	등급	발급 기준
24	협회	통합	한국문화예술심 리상담협회	문화예술심 리상담사	전문가, 1급, 2급	2급 과정 기본 3개월 교육 수료 및 시 험 합격, 임상 실습 후 자격증 취득(전 문가 과정까지 약 1년 소요)

* 학회/협회 자격증은 필수 임상실습 및 수개월 교육, 자격시험을 통한 자격증 취득인 반면, 민간교육기관은 약 4~6주 교육과 시험으로만 취득가능함

* 상단에 기재된 예술치료사 자격증은 대표적으로 주요 자격증만 기재하였으며, 1급 자격증 발급 기준으로 작성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문화예술치유사” 자격제도를 국가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가 자격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설하려는 자격제도의 기준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고, 관련 산업계 수요가 있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훈련과정과 연계가 이루어져 있는 등 「자격기본법」에서 정해진 주요 요건³⁾이 충족된 상황에서,

민간자격증만으로는 해당부문의 서비스 이용자가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

3) 「자격기본법」

제3조(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그러나 “문화예술치유사”의 경우, 정부에 업계에서의 수요·직무의 범위 등과 관련한 자료 등이 축적되어 있지도 않고, 문화예술치유의 세부 부문이 미술·음악·연극 등으로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 기준, 적절한 교육훈련 과정과의 연계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황임.⁴⁾

이와 같이 “문화예술치유사”의 국가 자격제도화에 필요한 전제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 자격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둘째, “문화예술치유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및 갈등 발생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문화예술치유사”를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동 정의에 따르면 “문화예술치유사”의 범위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인력(강사, 기획자 등)도 포함되어 문화예술교육사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업무범위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4)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치유사”와 관련한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관련 연구용역(「문화 치유 전문인력 역량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을 수행 중이고, 추후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치유사”들에 적용할 교육과정 개발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또한 문화예술치유사와 유사하게 비의료적 심리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마음건강을 도모하는 정신건강상담사 등 유사직군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치유사”만 선제적으로 국가 자격제도화하는 경우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갈등상황이 발생할 우려⁵⁾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치유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과 문화예술치유사를 국가공인자격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치유사”에 대한 현장수요·직무범위·전문성 기준 등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고, 직역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6

5) 참고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를 국가 자격제도화 하고자 하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34)가 발의되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 사업 개요

- **(목적)**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처 치유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
- **(대상)** 학교폭력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자, 고립·은둔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치유 지원이 필요한 국민
- **(예산/기관)** ‘26년 50억원(전년동)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2026년 추진 방향

- **(대상특화 프로그램 지원)** 시설+예술치유 단체 협력으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치유 ‘마음치유, 봄처럼’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청소년			청년	청/중/장년	노년
	학교폭력 피·가해자	외로움 고립감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 신규	고립·은둔 청년 확대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치매 위험자
부처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중앙청년 지원센터	17개 시·도 지자체	중앙·광역 치매센터
협력 시설	Wee클래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청년센터 등	정신건강 복지센터	치매 안심센터
지원 규모	73개소	2개소	1개소	16개소	40개소	68개소
총 200개 협력시설, 3,000여 명 지원						

- **(지역 연계 생활권 치유)** 공모 기반의 지역 협력 모델로 추진
 - **(도시숲 예술치유)** 지역 생활권 내 도시 숲·공원·정원과 기초문화재단 협력으로 도시 녹색공간 기반 힐링형 프로그램 운영(5개소)
 - **(지역사회 협력 모델)** 정서적 돌봄 필요 대상 발굴 및 문화기반시설을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여 대상에 적합한 예술치유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4개소) * 광역문화재단-지역문화기반시설 협력

< 대상특화 프로그램 지원 >

- (마음치유, 봄처럼) 심리·정서적 상처 치유가 필요한 대상 특화별 협력 시설과 예술치유 단체 간 협력을 통해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220개 시설, 3,610명)

* △학교부적응 및 폭력 피·가해 △경도인지장애, 치매위험어르신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고립은둔 청년

< 일반국민 대상 기획 사업 >

- (치유도 예술로) 일반 국민 대상 회복과 힐링을 주제로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예술치유 워크숍 운영(25개 프로그램, 709명)

* 음악, 무용, 시각예술, 사진, 영화, 공예 웹툰, 통합 예술 등

- (도시숲 예술치유) 숲에서 예술을 매개로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확장하며 일상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사업(9개소, 11,688명)

* △고독노년×합창 △생애전환기 중년×무용 △문학 치유 워크숍 등

※ 추진 실적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 산	860백만원	1,544백만원	2,544백만원	2,544백만원	2,280백만원	2,280백만원	1,968백만원
수혜인원	661명	853명	1,087명	1,553명	1,320명	6,683명	3,738명
(대상특화)	661명	853명	1,087명	1,533명	1,320명	6,683명	3,738명
주요 정책대상	국군병원(국방부), 소년원학교(법무부), 여성보호시설(여가부) Wee클래스·스쿨(교육부) 등 부처별 협력						
	경도인지장애, 치매 위험군 등 치매안심센터 협력						
	난치병 환자,감정노동자						정신건강복지센터(복지부) 협력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예 산	3,604백만원	3,604백만원	3,604백만원	5,000백만원	5,000백만원
수혜인원	6,793명	9,390명	12,648명	16,007명	16,000명
(대상특화)	2,049명	3,439명	2,385명	3,610명	3,000명
(일반국민)	4,744명	5,951명	10,263명	12,397명	13,000명
주요 정책대상	Wee클래스·스쿨(교육부)				
	경도인지장애, 치매 위험군 등 치매안심센터(복지부) 협력				
	정신건강복지센터(복지부) 협력				
					청년미래센터(복지부) 협력 ('25년 신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복지부) 협력('25년 신규)
	외로움·고독감 정서 사각지대(생애전환기 중장년 등) 및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반국민				청년센터 협력